

학교법인상지학원종합발전위원회규정

제정 1998. 8. 25.

개정 2011. 09. 30

개정 2012. 03. 26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및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 및 수익사업기관의 제반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지학원 종합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(개정 2012. 03. 26)

1. 상지학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상지학원 산하기관 업무 조정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상지학원 산하기관 업무 중복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삭제(2012. 03. 26)
6. 삭제(2012. 03. 26)

제4조 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의 위원은 7인이내로 구성하며, 학교법인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단,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·외부 전문가 및 각급학교의 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법인 사무국장이 맡는다.(개정 2011. 09.30)(개정 2012. 03. 26)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6조 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전 제3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(개정 2012. 03. 26)

③(삭제 2012. 03. 26)

제7조 (자료제출 의무) ①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학교 및 수익사업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각 학교 및 수익사업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조사·연구의 의뢰)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

학교법인상지학원종합발전위원회규정

가,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 (실무위원회) ①이사장(이사회)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 및 연구팀을 운영 할 수 있다(개정 2011. 09. 30)

②실무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관련 분야별로 10인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.(개정 2011. 09. 30)

③실무위원회 및 연구팀의 위원장은 법인사무국장이 맡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위원회 및 팀으로 위임 할 수 있다.(개정 2011. 09. 30)

④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회의록 작성 및 보고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삭제 2012. 03. 26)

제12조 (회의비 등) 위원회(실무위원 등 포함)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 등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(조 신설 2011. 03. 26)

부칙 (1998. 8. 25)

이 규정은 199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인사무국 - 914. 2011. 9. 30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인사무국 - . 2012. 03. 26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